

## 1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(입주절차) 입주희망 국내복귀기업은 입주계약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입주계약 내용에 임대차 계약 포함 필요
- 나. (투자금액 기준) 입주계약 해지, 임대료 감면 및 환수, 갱신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기존 운영지침 규정을 준용
- 다. (기타)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대상 업종 등의 규정인 11조·12조 및 외투기업 대상 예외적 입주자격 유지 규정인 21조는 국내복귀기업에는 미적용함을 명시

## 2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 신 설 &gt;</p>	<p><b>제22조의7(비수도권국내복귀기업 입주제도)</b></p> <p>①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은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.</p> <p>② 입주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은 영 제26조의2 제3항</p>

및 제4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하며, 입주계약의 내용중에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.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국내복귀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입주계약의 해지, 입주한도, 임대,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, 임대료 감면 및 감면임대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사업계획의 이행, 협력업체 입주제도, 갱신계약의 체결, 신·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, 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, 복합

	<p>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금액을 국내복귀투자금으로 변경하여 제20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⑥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1조, 제12조, 제21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--	--